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6호)

2. 주요 변경내용 : A-U클래스 신설, 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추가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4.1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A-U BO253
제2조(용어의 정의)	<추가>	8. "전환형(엄브렐러)" 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추가>	6. 전환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4.종류 A-U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4. 종류 A-U 수익증권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신설>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

		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 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3.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4.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신종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7. 하나UBS 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8.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②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2.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3.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서 다

		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한다. ④제3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제3항제3호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2. 제3항제3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3. 제3항제4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⑥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

		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⑦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9조 (보수)	제3항	제3항 [종류 A-U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2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

		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U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U BO25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전환형(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U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U BO25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4 월 12 일 - A-U클래스 신설 - 투자신탁의 전환 조항 추가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종류 A-U 추가></td>
<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전환형

나. 종류형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h>판매수수료 총보수 및 판매보수</th></tr>
<tr><td>종류 A-U</td><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td><td>판매수수료 : 0.50% 이내
연 0.28% / 연 0.15%</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가입대상
종류별가입자격
<종류 A-U 신설>

<신설></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가입대상
종류별가입자격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U</td><td>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
</table>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별첨 1></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U 신설></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50% 이내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td></tr>
<tr><td></td><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U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U 신설></td><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A-U]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082%
판매회사보수율 : 0.150%
신탁업자보수율 :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18%
보수합계 : 0.280%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A-U</td><td>79</td><td>140</td><td>208</td><td>409</td></tr></table></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분류** <추가>	**분류** 전환형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W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A-U 및 종류 W 및 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석추가)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Call 금리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2. 전환절차 및 방법**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2>

<별첨1>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전환가능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8000%	연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94%	연 1.600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A-U	1.0% 이내	연 0.8374%	연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연 0.8000%	연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연 0.3400%	연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연 0.2664%	연 0.4500%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연 0.0784%	연 0.1320%	
하나 UBS 신종 MMF(S-26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연 0.1500%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①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및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5시30분 이전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30분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및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5시30분 이전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30분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③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및 하나 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7시 이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④하나UBS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4시 이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3) 전환시 유의사항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 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첨2>

펀드명	종류	선취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94%	1.600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A-U	1.0% 이내	0.8374%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3400%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0.2664%	0.4500%	
하나 UBS 신종 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0.0784%	0.1320%	
하나 UBS 신종 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0.5% 이내	0.1500%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9호)

2. 주요 변경내용
   1) 전환대상 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4.1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제 1 항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 항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제1항 4. <삭제> 9. 하나UBS 신종MMF(S-26호)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3항~제5항 공통 15시 13시 제3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3항~제5항 공통 15시30분 14시 제3항 다만, 제1항 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생략) 4. 제1항 제10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50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전환대상펀드(신종MMF S-26호) 추가,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가. 투자대상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 채무증권(채권, 기업어음) (생략)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생략) **다.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 채무증권(채권, 기업어음) (생략)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생략) **다.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삭제>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전환대상 펀드 추가>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15시 13시	**(2) 전환 절차 및 방법** 15시30분 14시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석추가)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51호)
2. 주요 변경내용 : 전환대상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펀드 삭제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4.1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제1항 4. <삭제> 9.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3항~제5항 공통 15시 13시 제3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3항~제5항 공통 15시30분 14시 제3항 다만, 제1항 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생략) 4. 제1항 제10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15시 13시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전환 절차 및 방법 15시30분 14시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전환대상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펀드 삭제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4.1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제1항 4.<삭제> 9.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3항 <각 호 공통 변경>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3항 <각 호 공통 변경> 다만, 제1항 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3.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생략) 4. 제1항 제10호에서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전환대상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펀드 삭제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라.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 주요 변경내용 : 전환대상펀드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4.12.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추가>	제1항 8.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제3항 3.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생략) 4. 제1항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3항 3.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52조의3(투자신탁의 전환2)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신종MMF(S-51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신종MMF(S-51호)" 및 "하나UBS신종MMF(S-26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다만,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전환 대상 펀드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하나 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 주요 변경내용

1) 전환대상 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4월 1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이하 "어음"이라 한다)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7. 환매조건부매매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04월 12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	제2항	제2항

합투자기구의 해지)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항 4. <삭제> 9.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10.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제52조의3(투자신탁의 전환2)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 신종MMF(S-51호)"을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생략)	제1항 2.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이하 "MMF"라 하고,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하나UBS 신종MMF(S-51호) 및 하나UBS 신종MMF(S-26호)"를 말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하나UBS 신종MMF(S-29호)"를 말한다). (생략)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1) 전환대상 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라. 전환형 구조 2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종 MMF [개인: 신종 MMF(S-51 호) / 법인: 신종 MMF(S-29 호)]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신종 MMF(S-51 호)"로 전환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신종 MMF(S-29 호)"로 전환됩니다. **기타유의사항**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5 등급중 매우 낮은 5 등급에 해당하므로 주식형 및 다른 채권형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적고 투자위험이 낮음 **신고서제출일** • 신종 MMF(S-51 호) : 2009.4.13 • 신종 MMF(S-29 호) :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환형 구조 2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종 MMF [개인: 신종 MMF(S-51호),신종 MMF(S-26호) / 법인: 신종 MMF(S-29호)]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신종 MMF(S-51호)" 및 "신종 MMF(S-26호)"로 전환되며,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신종 MMF(S-29호)"로 전환됩니다. <삭제>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식]에서(생략)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04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0.1500%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 UBS신종MMF(S-29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총보수 연 0.1320%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5. 펀드명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6. 주요 변경내용 :
- 전환대상 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7.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4. 12.

8.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 환매조건부매매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 19 조 (운용 및 투자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6호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20 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추가>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다른	제1항 4. <삭제> 9.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10.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10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 전환대상 펀드 추가 및 해지된 전환대상 펀드 삭제 -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사항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이하 "채권"이라 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이하 "채권"이라 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6.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6.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 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승승장구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전환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9. 펀드명 :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10. 주요 변경내용 : 전환 대상 투자신탁 추가

11.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4. 12.

12.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추가> 8.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제1항 8.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3.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전환 대상 투자신탁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전환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전환 대상 펀드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전환 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3. 펀드명 :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14. 주요 변경내용 :
1) 전환 대상 투자신탁 추가
2)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15.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4. 12.

16.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추가> 8.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3.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제1항 8. 하나UBS 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9.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3항 3.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5항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 청구한 경우 (생략)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1) 전환 대상 투자신탁 추가 2)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전환 대상 펀드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 12.5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 12.0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전환가능 투자신탁 표]

	<전환 대상 펀드 추가>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 하나UBS신종MMF(S-2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생략)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생략)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5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0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전환 대상 펀드 추가>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 UBS신종MMF(S-26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 0.50% 이내 판매보수 : 연 0.1500% 총보수 : 연 0.2800%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2)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4월 1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하는 경우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04월 12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

		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1)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2)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반영 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5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65%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

	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신설)	축을 해지하는 때에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6)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

	(생략)	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3.5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65%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4월 12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8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81%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4월 12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4월 12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전환전>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0.36%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환전>**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8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등급 (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

		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전환전>**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0.36%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전환전>**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8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